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중 “여성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

제8조제1항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삭제한다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11조중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하고 “생활지도
계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①~③(생략)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여성복지과</u> 장이 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)①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여성정책담당</u> <u>사무관</u> -----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②(생략)	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
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(생략) ② <u>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</u>	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(생략) ② <u>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</u>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<u>사회복지국</u> 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<u>생활지도과</u> 장으로 한다.	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----- ----- <u>여성정책관</u> ----- <u>여성정책담당사무관</u> -----